교원인사 규정

제정일 : 1973년 12월 01일

개정일 : 2024년 10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임용, 평가, 포상, 신분보장, 징계,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6.5.3.>

제3조(교원의 분류)

① 교원은 정관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과 강사 및 그 밖의 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7.2.>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 연구, 산학 등의 세부 트랙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05.03, 개정 2018.02.27.>

④ 비정년트랙 교원은 전담하는 직무와 임용기간에 따라 교양외국어 및 언어실습전담교원, 교육전담교원A, 교육전담교원B, 교육전담교원C, 교육전담교원S, 연구전담교원A, 연구전담교원B, 연구전담교원C, 산학협력중점교원, 학연교원, 글로벌교육교원, 교육협력교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5.3., 개정 2018.2.27., 2021.7.27., 2021.11.11., 2022.4.8.>
⑤ 강사는 담당 교과목에 관한 교육·지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겸업 여부에 따라 전업강사, 초빙강사, 겸임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7.2.>
⑥ 그 밖의 교원은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9.7.2.>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 제5조 이하는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5.3.>
②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2조, 제49조,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교와 교육병원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교육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교육병원의 내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6.5.3., 2019.7.2.>
③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강사 및 그 밖의 교원에 대한 임용과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7.2.>
⑤ 학연교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과 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

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제59조의2에서 같다.)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2.23.>

제5조(직급 등)

①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한다.

②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의 직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전담교원A, 교육전담교원S, 연구전담교원A, 연구전담교원B, 연구전담교원C,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협력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7.27., 2022.4.8.>
③ 제3조 제3항에 따른 세부 트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2.27.>

[제목개정 2018.2.27.]

제6조(겸직금지)

교원은 타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 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교원의 신규채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05.04.>

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제9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중소기업

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지능정보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대상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5.04.>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총장은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4.>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밖에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의 내역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04.>

⑥ 겸직허가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항번호변경 2021.05.04., 개정 2021.05.04.>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8조(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단과대학 인사심의위원회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목개정 2014.8.27.]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원의 인사와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원)단위에 단과대학 인사심의위원회(이하 "인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 학과(부)단위에 학과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학과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10조(위원회의 역할)

① 인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하고 종합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5.3.>
1. 학과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업적에 대한 검증 및 심의
2.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사항
 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승진, 재임용, 승급에 대한 심의
 나. 정년보장 대상교원에 관한 심의
 다. 학과별 교원업적평가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라. 단과대학별 인사심의 내규 제·개정 발의
②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③ 학과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하고 종합하여 심의한다.
1. 업적에 대한 검증 및 평가
2.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인사심의위위원회에서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사항
3. 학과 교원업적평가 내규 개정 발의

[전문개정 2014.8.27.]

제4장 임용

제11조(임용의 원칙)

① 교원의 임용은 연구 및 교육·봉사실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
③ 산학협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체 경력자의 임용을 우대할 수 있다.
④ 교원을 임용하는 때 성차별 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용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승급, 정년보장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3.>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 6월
② 퇴직교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전의 당해 직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용심사절차)

정년트랙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승급, 정년보장 심사절차와 방법 및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심사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5.3.>

제14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43조에 따르되, 이외의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16.5.3.>

제15조(임용일)

①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재임용과 승급, 정년보장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연수의 시작일과 복귀일, 휴직·정직의 시작일과 복직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3.]

제16조(임용기간 및 계약)

① 정년트랙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4.8.27., 2018.2.27., 2018.5.11., 2024.04.30.>
1. 임용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교수 직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3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3년 이하의 기간
 나. 부교수: 교수 직급 승진자격년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격년수 잔여기간. 다만, 교수 직급 승진자격년수를 경과한 자는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개정 2021.07.27.>
 다. 조교수: 조교수 직급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5년, 조교수 직급에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3년, 4년 이하인 경우에는 승진자격년수 잔여기간. 다만, 부교수 직급 승진자격년수를 경과한 자

는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조교수 6호봉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6년
 라. "가"목 내지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4항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정한 기간
2. 급여 : 제55조에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 교육, 학생지도, 연구활동 등의 근무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 학생지도, 연구실적, 봉사실적, 산학협력실적, 학교발전공헌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요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체결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 제19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승진자격년수에 도달한 자가 승진임용 되지 못한 경우 또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조항 이하의 임용기한에 도달한 자가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정한 재임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재임용 한다. <개정 2018.2.27., 2019.1.24.>
⑤ 삭제 <2019.1.24.>
⑥ 삭제 <2018.2.27.>
⑦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교원, 글로벌교육교원, 학기 중에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2016.5.3., 2018.2.27.>

제17조(임용기간계산)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2.27.>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 제4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제18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제46조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19조(임용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갖춘 자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그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② 교원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학력과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3.>
③ 교원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제1항 내지 제2항의 연구실적·교육경력년수를 포함하여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년수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승진자격년수"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7.>
1. 조교수 : 7년
2. 부교수 : 5년
④ 박사학위 미 소지자의 승진자격년수는 제3항의 각 호에 2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공연전시

설계실기분야인 경우에는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된 교원의 승진자격연수는 제3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해당 임용제한 기간을 가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6.5.3., 2018.2.27.>
⑥ 삭제 <2016.5.3.>

제2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교 교원에 신규채용 될 수 없다. <개정 2022.6.1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재직 중인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전문개정 2018.2.27.]

제21조(면직제청)

교원이 재직 중에 결격사유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을 제청한다. <개정 2018.2.27.>

제22조(신규채용)

①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
②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거나 또는 업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비공개전형(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7.]

제23조(채용심의회)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위하여 당해 학부(과·전공) 및 대학(원)에 교원신규채용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내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외 전

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제목개정 2018.2.27.]
[전문개정 2018.2.27.]

제24조(채용절차 및 심사)

①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전자매체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채용후보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③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2.27.]
[전문개정 2018.2.27.]

제25조(경력산정)

①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은 이를 통산하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기간중 두 기관 이상에서의 연구 및 교육경력은 한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한다.
③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산업체 연구경력은 별도의 정함에 따라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산출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 연구 및 교육경력 중 전담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3.]

제26조(호봉 및 연봉)

① 정년트랙 교원은 직급별 호봉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연봉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2018.2.27.>
1. 특별채용 전형으로 임용된 자
2. 삭제 <2018.2.27.>
3. 삭제 <2018.2.27.>
4. 임상의학 전임교원 중 의료원 겸직·겸무가 해지된 자
5.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교원의 직급 및 호봉 부여 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③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연봉계약을 한다.

제27조(승진)

①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에 따라 승진자격년수를 충족한 자
2. 연봉계약에 따라 승진자격년수를 충족한 자
② 교원의 승진은 학과업적평가위원회와 인사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평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박사학위 소지자의 직급별 승진호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교수 1호봉 → 부교수 5호봉으로 승진
2. 부교수 1호봉 → 교수 10호봉으로 승진

④ 박사학위 미 소지자는 제2항의 직급별 승진호봉에서 2호봉을 낮추어 승진하되, 공연전시설계실기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1호봉을 낮추어 승진한다.
[전문개정 2018.2.27.]

제28조(특별승진)

① 특별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3.>
1.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에 따라 해당 직급 3호봉에 달한지 1년이 경과한 정년트랙교원 또는 2호봉에 달한지 1년이 경과한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학과내규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개정 2021.07.27.>
2.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② 교원의 특별승진은 학과업적평가위원회와 인사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평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4.8.27., 2018.2.27.>
③ 삭제 <2018.2.27.>
④ 교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도 제27조 제3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29조(승급)

① 정년트랙 교원의 승급자격년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 임용제한 기간을 가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8.2.27.>
1. 조교수·부교수는 1년
2. 교수는 2년
② 교수직급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제1항의 승급자격년수를 충족한 자는 승급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2016.5.3., 2018.2.27.>
③ 부교수·조교수의 승급심사는 제1항의 승급자격년수가 경과한 정년트랙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3., 2018.2.27.>
④ 교원의 승급은 학과업적평가위원회와 인사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평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2.27.>

제30조(특별승급)

① 특별승급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3., 2018.2.27.>
1.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에 따라 1년을 가산하면 교수 직급의 7호봉 또는 4호봉에 달하는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학과내규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2.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② 교원의 특별승급은 학과업적평가위원회와 인사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평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4.8.27., 2018.2.27.>
③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의해 특별승급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가산한 호봉을 부여하고, 제1항 제2호에 의해 특별승급한 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한 호봉을 부여한다.
④ 삭제 <2018.2.27.>
⑤ 교원이 특별승급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승급자격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2.27.>

제31조(특별호봉)

① 교수 직급 1호봉에 달한 교원 중에서 연구 능력이 탁월한 자 또는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정한 호봉(이하 "특별호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17.4.6.>
② 제1항의 특별호봉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5.3.>

제32조(신분 및 처우의 변동)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직급의 교원이 승급자격년수가 경과된 지 2년 내에 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분 및 처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2018.2.27.>

제3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학과내규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과업적평가위원회와 인사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평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4.8.27., 2018.2.27.>
②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을 신청 받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과업적평가위원회,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6.5.3.>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7.>
⑥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여 재임용거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유예기간 내에도 추가된 재임용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거부 유예기간 만료일에 당연 면직된다. <개정 2018.2.27.>
⑦ 삭제 <2016.5.3.>
⑧ 재임용거부를 통보 받은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면직된다. <개정 2016.5.3.>
⑨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⑩ 임용기간 만료 이전 승진자격 연수에 도달한 교원이 승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승진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23.11.1.>

제34조(정년보장)

① 교수직급 승진자격년수에 도달한 정년트랙 교원 또는 신규채용 후 3년이 경과한 부교수 이상 직급의 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18.2.27., 2019.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수직급 승진자격년수에 도달한 정년트랙 교원 또는 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조항의 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정년보장 신청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5년 이내에만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4.>
③ 전적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을 본교 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2019.1.24.>
④ 삭제 <2018.2.27.>
⑤ 비정년트랙 교원 중 업적이 탁월한 경우 별도로 정한 트랙전환 절차와 정년보장 심의절차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⑥ 정년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7., 개정 2019.1.24.>

제35조(인사기준 등)

정년트랙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승급, 정년보장을 위한 자격 및 신청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6.5.3., 2018.2.27.>

제5장 교원업적평가

제36조(업적평가 원칙)

① 업적평가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② 업적평가는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③ 업적평가 결과는 정년트랙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승급, 정년보장 심사평정과 우수교원 선정 등에 적용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심사평정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6.5.3.>

제37조(평가영역)

① 평가는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및 산학영역으로 하되 평가영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영역은 해당 전공학문의 지성적,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 활동을 포함한다.
2. 교육영역은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강의, 실습 등)하고 지도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3. 봉사영역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4. 산학영역은 해당 전공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계와의 연구, 교육,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영역은 캠퍼스별로 달리 구성할 수 있고,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산학영역을 각각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각 영역별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절차 등은 캠퍼스별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8조(재심)

① 피평가자는 업적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청구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포상

제39조(포상의 구분)

포상은 개인포상과 단체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3.>

제40조(백남석학상)

① 백남석학상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훌륭한 교육과 뛰어난 학문적 업적으로 민족문화 창달과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백남석학상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업적포상)

학문적으로 우수한 자의 교육과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매년 본 학원 개교기념일 또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 행한다.

제43조(포상의 절차)

포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 또는 총장이 행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44조(휴직)

교원의 휴직사유와 휴직기간, 휴직교원의 신분과 처우에 대하여는 정관 제44조 내지 제4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직위해제)

교원 직위의 해제에 대하여는 정관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면직의 사유)

교원의 면직 사유에 대하여는 정관 제4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교원이 교육병원에서 면직되는 경우에는 면직시점에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3.>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에 대하여는 정관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정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9조(명예퇴직)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5.3.>

제8장 징계

제50조(징계의결 제청)

총장은 교원 중에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한 후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에 관한 사안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1조(징계 사유)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교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나 징계사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총장은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다. 이 때의 경고나 주의는 징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11.>

제5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2.25.>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4조(징계절차)

교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는 정관 제59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5.3.>

제9장 급여

제55조(급여)

① 교원의 급여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급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연봉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2018.5.11.>
② 교원의 업적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년 교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파견·휴직·정직 후에 복귀 또는 복직하는 경우에는 이후 강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책임강의시간 대비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감액한 후 일할 계산하여 당해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
⑤ 교수직급에서 승급자격년수를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승급하지 못한 자 또는 64세에 달한 자가 책임강의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2.27.>

제10장 복무

제56조(의무)

① 교원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 연구 및 교내외 활동에 관한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 교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등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특정활동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교원의 강의시간 및 복무)

① 강의시간 인정기준은 교원의 교수법, 강의의 특성, 강의에 참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7.2.>
② 정년트랙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상으로 하되 2학기 동안 총 15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 2019.7.2.>
③ 제2항의 책임강의시간에는 학기별 학부강의 1강좌 이상을 포함하여 2학기 동안 총 9시간 이상은 학부강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3., 개정 2019.7.2.>
④ 비정년트랙 교육전담교원과 교양외국어 및 언어실습전담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연평균 주당 12시간으로 하며, 그 외의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
⑤ 책임강의시수는 학부강의, 대학원강의(일반, 전문,특수대학원 포함)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7.2.>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강의시간을 특정업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3., 2019.7.2.>
⑦ 교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5.3., 개정 2019.7.2.>
[제목개정 2016.5.3., 2019.7.2.]

제58조(소속 및 전보)

① 교원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학부교육을 담당하는 학과와 대학원 학과에 각각 소속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연구 및 산학협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교육을 담당하는 학과 이외의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4.13.]
[전문개정 2016.5.3.]

제59조(겸임·겸무)

① 교원의 교육과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해당 기관에 겸임·겸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② 교원의 겸임을 명받은 부서의 장은 겸임하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8.27.]

제59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총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총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60조(파견)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해당 기관에 파견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 또는 산학교류협약 등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개정 2018.8.23.>
② 파견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당 파견이 본교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파견된 기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1조(연구년)

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를 시행한다.

제62조(연수)

임상의학전임교원은 본교의 진료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 또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5.>

제63조(해외여행)

교원이 연구 등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인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휴가 등)

① 총장은 교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 불능이거나 전염병으로 다른 교직원 또는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원의 병가 또는 산전후휴가 중에는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한다.
④ 경조사 등으로 인한 청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장 인사기록

제65조(인사 기록)

각 캠퍼스의 교원인사 부서인 교원인사팀(서울), 교원임용팀(서울), 교무팀(ERICA)은 교원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6조(서류 보관)

제65조의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의 인사서류를 비치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제67조(인사관리의 전자화)

교원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시에 재직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진 및 승급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전 항의 기간은 그 임용, 승진 및 승급일자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4)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시에 재직중인 조교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3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7.>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교예규 제417호에 의거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8.1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원재임용규정, 계약제신임교수규정, 교수업적평가규칙, 계약제신임교수업적평가규칙, 신임교수임용절차에관한규정, 계약제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임용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규정 시행전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8.30. 개정)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15.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2.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비정년트랙에 관한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임용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재임용 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7.8.2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HYU석좌교수로 표창한 교원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에 의한 HYU석학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부칙(2008.3.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1.1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2조(규정적용 제외) 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

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11.2.2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공포)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2011년 1월 이후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에 대하여도 제50조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5.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4.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기존의 산학협력전담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2012.11.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5.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8. 공포,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6조의 임용기간은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에 의한 연봉계약은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에 의한 승진, 제28조에 의한 특별승진, 제29조에 의한 승급, 제30조에 의한 특별승급, 제31조에 의한 특별호봉, 제33조에 의한 재임용, 제34조에 의한 정년보장은 학과 내규에 의한 인사기준이 제정되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2014년 3월 1일 이후부터의 제27조에 의한 승진, 제28조에 의한 특별승진, 제29조에 의한 승급, 제30조에 의한 특별승급, 제31조에 의한 특별호봉, 제33조에 의한 재임용, 제34조에 의한 정년보장은 2014년 3월 1일에 시행되는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에서 정하는 업적평가방법과 그 결과에 의하여 심의한다.
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임용유예 중에 있는 자와 승급유예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의한 승진, 제28조에 의한 특별승진, 제29조에 의한 승급, 제30조에 의한 특별승급, 제31조에 의한 특별호봉, 제33조에 의한 재임용, 제34조에 의한 정년보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및 승진임용과 승급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한다.
⑥ 제33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에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처음 도래하는 재임용에 한하여 재임용종합심사평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재임용요건을 부과하여 2년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8.27.>
제3조(폐지되는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 내부겸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4.8.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① 2014년 9월 1일 특별승진, 특별승급에는 규정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이외에도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승진, 특별승급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근거하여 2014년 9월 1일에 특별승진한 자는 다음 직급으로의 승진소요연수 기준일과 이에 필요한 업적평가실적 기준일을 2014년 3월 1일로 적용한다.

부칙(2014.12.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1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 제7항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5.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23. 공포)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6. 공포)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9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에 신규 임용된 교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8.8.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4.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4조 제4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교원 및 직원 급여규정」 제28조 제7항,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한다. <개정 2024.10.30.>

부칙(2019.11.11.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5.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05.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21.03.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04.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7.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6조의 부교수 임용기간은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에 임용된 교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②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1.11.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4.0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6.14.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05.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공포와 동시에 「교원 산학·창업 지원을 위한 연수 및 휴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2023.06.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규정, 2023.11.0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사항은 조직개편 관련 규정이 공포된 2023년 6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⑮ <생략>
⑯「교원인사 규정」제65조를 "각 캠퍼스의 교원인사 부서인 교원인사팀(서울), 교원임용팀(서울), 교무팀(ERICA)은 교원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⑰~⑳ <생략>

부칙(2024.04.30.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6조의 조교수 6호봉 임용기간은 2019년 9월 1일 이후에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2024.10.30. 공포)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11항의 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학교법인 한양학원 산하 기관 내 규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직원"은 "직원"으로 하고 "일반직"은 "사무직"으로 한다.
②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당직규정, 서울 장학복지회 정관 내 사용되는 "기술직"은 삭제한다.

별표

(별표 1)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별표 1] 교원자격·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표(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hwp